

54 · 화재안전기준

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08.12.15〉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08.12.15〉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개정 11.11.24〉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

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 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설"이라고 표시할 것

〈개정 08.12.15〉

제8조(배관)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둘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름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개정 16.7.13〉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6.7.13〉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라. 덱타일 주철관(KS D 4311) 〈신설 16.7.13〉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6.7.13〉
 -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신설 16.7.13〉
 -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 〈신설 16.7.1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7.7.26〉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덱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전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11.11.24〉

(3)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